

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

유은혜*

◀ 요약 ▶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정보보호법, 국제인권레짐, 인권, 정보화, 사건사 분석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eyoo@ssu.ac.kr)

1. 서론

국가 수준의 최초의 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정보법(Data Act 1973)이 1973년 제정된 이후, 2013년 6월 1일 현재 99개 국가가 정보보호법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Greenleaf, 2013(b)).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정보보호법 제정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1970년대에 9개국, 1980년대의 12개국, 1990년대에는 20개국, 2000년대에는 39개국, 그리고 2010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19개 국가가 정보보호법을 채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Greenleaf, 2013(b): 10). 물론 이런 정보보호법의 국제적인 확산은 정보량의 증가로 인한 프라이버시/네트워크 보안 위협의 결과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 즉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의 등장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인권 대한 관심과 인권 존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국제 인권 규약, 국제 인권 선언문, 각 국가의 인권기구 설립 등을 통해 공유되어 왔으며 인권 문제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같은 핵심적인 국제 인권 규약들과 전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제인권운동기구, NGO 등이 국제인권레짐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지적된다(Donnelly, 1986; Risse-Kappen, Ropp & Sikkink, 1999). 이들이 형성한 인권에 대한 담론과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많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각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 제정 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와 1990년에는 정보인권과 정보보호법 문제가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Metzl, 1996).

정보보호는 공익과 사익, 특히 국가 권력의 빅브라더 화나 기업의 이윤추구에 맞선 개인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홍성태, 2004; 김동노, 2003; 방석호, 2003). 그러나 기존의 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들은 정보보호법의 제정의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정보보호법의 법률적인 해

석, 법철학적인 의미 분석, 혹은 외국의 법률적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 과학분야에서는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 연구들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예: 심의기, 1999; 김혜정, 2007; 한학수,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법과 인권과의 관계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 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재조명되어오고 있으며 정보보호법의 확산은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정보인권 분야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주제이기도 한다(명재진 · 이한태, 2011).

본 연구는 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법률적인 해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법의 확산의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법이 인권을 보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보법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인권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실행은 각 국가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권력과 상업적 이익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한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명재진 · 이한태, 2011). 또한 증대되고 있는 국가 간 규약, 협약, 혹은 규범의 확산을 통한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역시 정보보호법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reenleaf, 2013b; Shaffer,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지난 40여 년간 세계 사회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국제인권레짐이라는 사회적, 국제적 요인이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117개 국가에 대한 비교 국가 사건사 분석이라는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해내고자 한다.

2. 이론적 함의

1) 정보보호법의 내용

정보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와 국제규약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은 모두 정보인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적정보의 보호’와 ‘공적 정보의 자유’의 두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안정성,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

정보수집의 제한에 관한 문제나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막는 자기정보 통제권의 문제는 정보 인권 중 사적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강동욱, 1999; 김일환, 2008).¹⁾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정보접근권(액세스권)과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명재진·이한태,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정보보호법의 제정이란 단순히 법 제정의 의미를 떠나 정부가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보호법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제시된 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Bennett과 Rabb(2006)이 제시한 12가지 ‘공정한 정보 원칙(fair information principles, FIPs)’으로 이는 익명거래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분리처리의 원칙, 시스템 공개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 구속의 원칙, 제공 제한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안의 원칙, 책임의 원칙, 감독의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인호, 2004; 2007).²⁾ 이와 유사한 내용을 Bygrave (2002)도 역시 주장하고 있으며 Bygrave의 경우, 정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공정한 정보의 원칙의 한 구성요소로 추가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 역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 있어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두 국제 규약은 1981년의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1981년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CoE))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이다. 이 두 국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Greenleaf(2013(b))의 경우 정보보호의 15개의 원칙을 설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1) 유럽의 정보보호 전무기관인 ENIS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ociety Agency)는 프라이버시 보안 위협의 종류로 개인프로파일 수집, 2차 데이터 수집, 안면 인식과 개인정보 연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익명성 약화,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 이미지 메타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연계, 완전한 계정 삭제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으며 이는 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기주 2012: 26).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인호(2007) 195~196쪽 참조.

[표 1] 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15가지 원칙

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15가지 원칙
1. 과도한 정보 수집 금지.
2.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정보 수집.
3. 정당한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4. 정보 수집 시 수집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5. 정보 수집 대상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고지를 한 후 수집.
6. 제공되는 정보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
7. 동의나 법률에 따라 수집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8. 동의나 법률에 의해 수집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9. 허용이 될 경우에만 정보의 2차 사용이나 공개가 가능하다.
10. 사용 변경이 있을 경우 2차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1. 안전보완 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1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원칙은 공개성을 띄어야 한다.
13.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4. 개인정보를 수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5. 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Greenleaf, 2013(b): 7-8

위의 [표 1]에 정리된 15개의 원칙과 위에서 논의된 ‘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Greenleaf(2013(b): 8)는 정보보호법의 최초 제정 년도를 각 국가별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 역시 Greenleaf(2013(b))의 정보보호법 정의에 기반, 정보보호법의 제정 ‘사건’을 첫째, 접근권과 수정권(개인 참여)의 원칙, 둘째, 수집 목적에 근거한 정보 공개의 한계 설정과 정보사용의 원칙, 셋째, 정보보안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15가지의 OECD/CoE의 원칙들 중 최소 11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³⁾

³⁾ 물론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처럼 온라인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상정함으로써 정보보호법 자체를 인권억압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오길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정보보호법의 내용 그 자체는 인권보호에 우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물론 각 국가의 자세한 국내 사정과 법 집행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나 위에서 언급한 정보보호법의 내용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원리로 연결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보

2) 정보보호법의 확산원인

(1) 무역자유화와 정보보호법의 확산

정보보호법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국제 무역의 자유화 압력이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보호법의 제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보다는 보다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역자유화 압력으로 인한 정보보호법 제정 압력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차이로 인한 논쟁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Shaffer, 2000; 유석진·장우영, 2005). EU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법에 의한 규제(형사법)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별, 기업별 자율규제(민사법)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 의해 정보보호정책 수정 압력을 받았으며(Shaffer, 2000)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OECD국가들 역시 무역자유화의 요구의 일환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유석진·장우영, 2005: 102-103). EU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미국은 결국 EU와 OECD 기준을 충족하는 세이프하버 원칙을 제안해 2000년 7월 EU와 잠정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유석진·장우영 2005). 이러한 국제 정보보호기준으로의 정책 수립의 배경에는 통상장벽을 허물고 무역거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1.a.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더 적극적일 것이다.

보호법이 각 국가의 인권 실천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보다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국제인권레짐이나 인권운동의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정보보호법의 확산

기본적으로 정보보호법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인터넷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기본정보량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한 개인정보량과 데이터양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 현상들이 정보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정보보호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2010). 특히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달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법 제정의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Banisar and Davies, 1999; Regan, 1995). 한국의 경우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96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인터넷의 확산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법’에 대한 필요를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명재진·이한태, 2011; 이인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수와 고급테크놀로지 수출률의 정도가 한 국가의 정보화와 과학기술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a. 한 국가의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더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2.b. 한 국가의 제조업 대비 고급테크놀로지 수출률이 증가하면 할수록 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더 적극적일 것이다.

(3) 국제인권레짐과 정보보호법의 확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는 역사적으로도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근대적인 인권권리선언이라 할 수 있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 12조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

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http://www.unesco.or.kr/hrtreaty/1_1.pdf, 3쪽). 비단 1948년 세계 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등 다양한 국제협약에서도 정보보호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담겨져 왔으며 그 내용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Banisar and Davies 1999).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합의는 국제규약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인권연구자들이 국제단체를 통한 인권보호를 위한 각 국 정부에 대한 압력이 실제로 인권수준을 높이고 각 국가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Keck and Sikkink, 1998; Thomas, 1999). 실제로 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의 국제단체는 인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권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확산 기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인권수준이 낮고 정부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한 경우 국내 인권 단체들은 정부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국제단체에 직접 호소하여 국제단체나 기구로 하여금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⁵⁾ 인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규제와 규율을 국제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학자들 역시 정부가 정책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전문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공

⁴⁾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규약들 뿐만 아니라 1981년에 제정된 OECD/CoE의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들이나 지역 수준의 국가 간의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들도 존재하며 35년간 지속되는 ICDPPC(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2007년에 조직된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과 같은 단체들 역시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권'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위의 규약과 각 국가의 가입 여부 등은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⁵⁾ Keck and Sikkink(1998)은 이를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라 부르고 있다.

동체나 NGO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어놓고 있다(Hass, 1992; Wapner, 1995; Drezner, 2004).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과의 관계를 분명히 명시한 국제규약의 생성과 국제단체를 통한 ‘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의 확산, 즉 사적정보보호와 공적정보공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개념의 공유는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증가되는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a. 국제인권규약을 많이 비준한 국가일수록 인권에 대한 존중도가 높아 정보보호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3.b. 국제단체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보보호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3. 자료와 방법론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정보보호법의 제정(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정보보호법의 확산과 채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국가 인권 수준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정보보호법의 최초 채택 년도는 Greenleaf(2013(a))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0 과 1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각 국가의 최초 정보보호법 제정년도는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각 국가의 최초 정보보호법 제정년도

국가명	핵심법률안	제정년도
알바니아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99
안도라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03
앙골라	Lei da Protecção de Dados Pessoais	2011
아르헨티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00
아르메니아	Law on Personal Data	2002
오스트레일리아	Privacy Act 1988	1988
오스트리아	Datenschutzgesetz	1978
아제르바이잔	Law on personal data 2010 (replaces 1998 Act)	1998
바하마	Data Protection (Privacy of Information) Act	2003
벨기에	Law on Privacy Protection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92
베냉	Loi Portant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01
불가리아	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02
부르키나파소	Loi Portant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4
캐나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1983
카보베르데	Regime Jurídico Geral de Protecção de Dados Pessoais a Pessoas Singulares	2001
칠레	Privacy Law	1999
콜롬비아	Data Protection Law	2008
코스타리카	Protección de la Persona frente al tratamiento de sus datos personales	2011
크로아티아	Act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03
키프로스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Protection of the Individual) Law	2001
체코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1992
덴마크	Act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78
두바이 IFC	Data Protection Law ('IFC'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2007
에스토니아	Data Protection Act	2003
핀란드	Personal Data Act	1987
프랑스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against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78
마케도니아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05
가봉	Law related to personal data	2011
조지아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12
독일	Federal Data Protection Act	1977
가나	Data Protection Act	2012
그리스	Law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97

국가명	핵심법률안	제정년도
그린란드	(Danish) Public and Private Registers Acts	1979
홍콩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1995
헝가리	Act on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1992
아이슬란드	Law on the Prot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89
인도	Rules under s43A (2008 Amendt),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2011
아일랜드	Data Protection Act	1988
이스라엘	Privacy Protection Act 1981	1981
이탈리아	Consolidation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96
일본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003
코소보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10
키르기스스탄	Law on Personal Data	2008
라트비아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Natural Persons	2000
리히텐슈타인	Gesetz über die Abänderung des Datenschutzgesetzes (2002)	2002
리투아니아	Law on Legal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96
룩셈부르크	Data Protection Law	1979
마카오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07
말레이시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몰타	Data Protection Act	2001
모리셔스	Data Protection Act	2004
멕시코	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eld by Private Parties	2010
몰도바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07
모나코	Act controlling personal data processing	1993
몬테네그로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08
모로코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u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9
네팔	Right to Information Act	2007
네덜란드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1988
뉴질랜드	Privacy Act 1993	1993
니카라과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12
노르웨이	Personal Data Act	1978
파라과이	Law 1682 on Information of a Private Nature	2002
페루	Law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11
필리핀	Data Privacy Act	2012
폴란드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97
포르투갈	Lei da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1991
카타르 FC	Data Protection Regulations ('FC' = Financial Centre)	2005
루마니아	Law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c	2001

국가명	핵심법률안	제정년도
러시아	Federal Law Regarding Personal Data	2006
산마리노	Law regulating the Computerized Collection of Personal Data	1983
세네갈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8
세르비아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08
세이셸	Data Protection Act	2003
싱가포르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슬로바키아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92
슬로베니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1990
대한민국	Data Protection Act	2001
스페인	Ley Orgánica de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1992
세인트 루시아	Data Protection Act 2011	2011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Privacy Act	2003
스웨덴	Personal Data Act	1973
스위스	Data Protection Act	1992
타이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1995
타이	Official Information Act 1997	1997
트리니다드 토바고	Data Protection Act	2011
튀니지	Loi portant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4
우크라이나	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2011
영국	Data Protection Act 1998	1984
미국	Privacy Act of 1974	1974
우루과이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008
베트남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2010
예멘	Law of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2012
짐바브웨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2002

출처: Greenleaf, 2013(a)

2) 독립변수

(1) 민주주의 수준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정보보호법의 채택과 인권관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Polity IV 데이터셋(Marshall, Gurr and Jagers, 2013)의 민주주

의/독재주의 점수를 사용했으며 행정직 선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자유를 용인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에 의해 보장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10(독재주의)부터 10(민주주의)의 척도로 측정된 시간변동 변수이다.

(2)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정보보호법과 인권관행에 대한 민감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인당 GDP(2000년도 미국 달러화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변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World Bank, 2013)를 사용하였으며 불균등한 종단적 분포로 인해 자연 로그 값을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3) 인권관행 수준

국가의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PTS 인권지수를 사용하였다. PTS 인권지수는 기존 인권연구에 있어서 각 국가의 인권관행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자주 사용되어왔으며(정진성·구정우·공석기 2010) 살인, 고문, 실종, 정치적 투옥 등과 같은 인권관행의 다양한 수준을 1점에서 5점까지 나누어 기록하였다. 1점을 부여받은 국가의 경우 인권관행이 높고, 5점의 경우 인권억압이 심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이를 역순으로 다시 재배열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4) 외국자본의 투자

외국자본의 투자 역시 경제적 세계화에 의한 한 국가의 무역자유도와 외국자본의 진입으로 인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WDI 변수 중 외국자본투자비율(GDP 대비 %)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시간변동 변수이다.

(5) 인터넷 사용자와 (6) 기술수출

WDI 변수 중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를 측정한 시간변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 국가가 얼마만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DI의 고급테크놀로지 수출

를(제조업 대비 %)을 사용하였다. 고급 기술 수출은 한 국가가 항공우주기술, 컴퓨터, 제약업, 과학 장비, 그리고 전자기계와 같은 기술개발집약적인 제품을 얼마만큼 수출하는지를 측정한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관찰치가 주어지지 않은 값들은 주어진 가장 가까운 두 관찰 값의 단선적 추정치로 내삽(interpolation)된 값으로 대체되었다.

(7)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 수(INGO)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INGO)들의 네트워크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보보호, 즉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비정부기구단체의 숫자를 측정하였다. 국제단체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의 국제단체연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불균등한 종단적 분포를 피하기 위해 자연 로그 값을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8) 국제인권조약비준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국제 인권 조약, 즉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각 국가 누적비준숫자를 변수로 사용하였다(UN 2013, <http://treaties.un.org/>).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량과 정의, 그리고 출처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과 정의

정 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출 처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수준	-10	10	4,291	Polity IV
1인당 GDP(로그값)	4,836	10,626	7,791	WDI
인권관행	1	5	3,57	PTS
GDP 대비 외국인 순 투자(FDI) 비율(%)	-8,59	45,1	3,13	WDI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0	87,8	8,986	WDI
고급테크놀로지 수출률(제조업 대비 %)	0	83,6	9,608	WDI
국제민간단체수(로그값)	2,197	8,326	6,603	UIA
국제인권조약비준여부	0	2	0,928	UN

3) 분석기법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채택률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은 각각 1960년부터 2011년까지 117개국, 1577개의 관측수를 분석집단으로 삼는다. 사건사 분석은 각 분석단위, 즉 각 국가가 정보보호법을 채택할 사건을 경험할 확률에 각 독립변수들이 끼치는 영향을 모델화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통계적인 추측을 가능케 한다(Allison 1984; Tuma and Hannan 1984). 모델에 대한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lambda_{ij}(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_{ij}(t, t + \Delta t | T \geq t)}{\Delta t}$$

본 분석식은 한 국가(분석단위 i)가 정보보호법 채택(사건 j)을 어느 한 시점 t 와 Δt 사이에 경험하게 될 확률을 의미하고 있다. 정보보호법의 채택의 경우 사건의 경험에 시간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식으로 요약되는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을 사용한다.

$$\lambda_{ij}(t) = \exp(\beta x_{ij} + \epsilon)$$

위의 분석식에서 x_{ij} 는 독립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하고 β 는 주어진 해에 한 국가가 정보보호법을 채택할 우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분석 과정에서 1960년 전에 설립된 국가의 경우, 분석이 시작되는 1960년부터 정보보호법을 채택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1960년 이후에 설립된(혹은 독립된) 국가의 경우 설립된 해부터 정보보호법에 채택될 위험에 노출되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분석상의 시간상의 순서에 따른 역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독립변수들은 모두 1년 앞선 시차변수(lagged variable)가 사용되었다.

4. 분석결과

[표 4]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대한 지수모형 분석 결과(1960~2011)

	모형 (1) Coef.	모형 (2) Coef.	모형 (3) Coef.	모형 (4) Coef.
민주주의(t-1)	0.108*** (0.031)	0.113*** (0.032)	0.123*** (0.034)	0.071* (0.033)
1인당 GDP(t-1)	0.278** (0.098)	0.271** (0.102)	0.084 (0.136)	-0.164 (0.143)
인권지수(t-1)	0.237+ (0.136)	0.218 (0.138)	0.236 (0.147)	0.438** (0.165)
FDI(t-1)		0.043 (0.034)	0.006 (0.042)	0.035 (0.044)
인터넷이용자수(t-1)			0.039*** (0.009)	0.036*** (0.010)
고급기술수출률(t-1)			-0.013 (0.009)	-0.016 (0.012)
INGO(t-1)				0.858** (0.311)
국제인권규약(t-1)				0.799+ (0.443)
상수	-6.936*** (0.821)	-7.001*** (0.823)	-5.860*** (1.090)	-10.826*** (2.049)
에피소드 수	1577	1577	1577	1577
국가 수	117	117	117	117
로그 우도값	-3.410	-2.594	4.336	9.572
자유도	3	4	6	8
Wald 카이제곱	32.91	33.97	78.51	64.01

주1: + p<0.10,*p<0.05,**p<0.01,***p<0.001 (가로 안은 표준오차)

위의 [표 4]는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률을 분석한 사건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4개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형 1은 기본적 통제 변수로 볼 수 있는 각 국가의 내적 변수들, 즉 민주주의 발전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각 국 정부의 인권 존중수준이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한 모델이다. 모형 2는 위의 내적 발전모형에 더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압력이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한다. 모형 3은 인터넷의 확산과 과학기술발전정도가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며 마지막 모형 4는 모형 1~3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인권레짐 변수들이 정보보호법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했다. 우도비 검증을 통해 변수의 투입은 각 모델 2, 3, 4의 모델 적합도(model fit)를 모형 1보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내적발전 수준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모형 1은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한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변수들 중 민주주의 수준과 GDP 수준은 모형 3과 4에서 정보화/과학기술발전 변수들과 국제인권레짐 변수들이 포함되면서 그 영향력을 잃는다. 모형 1은 각 국가의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보호법 제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나 모형 2, 3에서는 인권존중 수준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인권존중 수준의 효과는 ($p < .01$) 국제 비정부 기구 단체(INGO) 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영향을 끼치는 내생적 변수들 외에도 외생적 변수들, 즉 가설 1.a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GDP 대비 외국직접투자비율을 넣고 가설을 검증해본 결과 무역자유화의 압력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이후 모형 3 과 모형 4에서도 유효하지 않은 변수로 검증되었다.

모형 3에서는 각 국가의 정보화율과 과학기술발전 정도가 정보보호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보급률에 따른 정보보호법의 제정 비율은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0.039)=1.03$)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보호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법 제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 2.a를 지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 국가의 제조업 대비 고급테크놀로지 수출률은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국제인권레짐의 증가가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한 국가의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 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할수록 그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률은 약 2.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xp(0.858)=2.35$) 이는 가설 3.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설 3.b의 예측대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제규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비준은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p<.1$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레짐의 측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법의 제정에서는 국제적인 인권 규약과 국제 비정부기구 단체(INGO)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왔다면 본 연구는 인권의 측면에서 전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와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했다.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11년까지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과는 반대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국가, 즉 정부의 인권 존중 수준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만약 정부의 인권 존중 수준이 정보보호법에 제정에 압력을 가하지 않

는다면 그 역의 관계를 설정해보는 것도 가능하며 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정부의 인권 존중 수준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117개국 안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정보보호에 관한 규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EU나 또한 OECD국가와 비OECD 국가 사이의 변수 차이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법 제정과 각국 정부의 인권 존중 수준, 즉 법 제정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제와 유사한 국가군별로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과제를 후속 연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정보보호법은 국가 간 인터넷 규제나 규율의 필요성 측면에서 각 국가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정책 영역이다 (Drezner, 2004; Schaffer, 2000; 유석진·장우영, 2005). 또한 단순히 국가 간 관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 분야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정보보호법 제정에 국제인권레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인권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공동체, 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단체들, 그리고 인권 보호를 강조해 온 국제 협약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제비정부기구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어 이들의 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지만(권민주, 2011; Metzl, 1996)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세기 후반에 들어 강화된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각국의 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확산 과정의 동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제정이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문화와 규범, 도덕 수준에 따라 그 실천이 빠르게 혹은 더디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는 최근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보보호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기주, 2012; 성준호, 2013) 정보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연 정보보호법 제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인권차원의 논의

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인권 사회의 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 존중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법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인권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강동욱 (1999).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80, 26-46.
- 권민주 (2011). 웹 2.0과 인권네트워크의 세계정치: 국제앰네스티의 사례. 169~203.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김상배 엮음. 서울: 한울.
- 김일환 (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법학연구*. 3, 5-36.
- 김동노 (2003). 지식정보 사회의 감시체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상*. 56(봄), 136-157.
- 김혜정 (2007). 성범죄자 정보등록, 열람 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 71(2), 865-885.
- 명재진, 이한태 (2011). 현재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18: 1, 3~23.
- 방석호 (2003).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자유의 갈등-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상*. 56(봄), 116-135.
- 성준호 (201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 2, 307-333.
- 심의기 (1999). 수사, 정보기관의 감청, 도청의 실태와 통신비밀 보호법의 개정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 39, 5-42.
- 오길영 (2008). 인터넷 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7, 281-310.
- 유석진, 장우영 (2005). 국가 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향: EU형과 미국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3), 79-118.
- 이기주 (2012). 스마트 사회의 보안위협과 정보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제언. *정보와 통신* 30: 1, 24-32.
- 이인호 (2004).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 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 이인호 (2007).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공법연구*. 35: 4, 177-219.
- 정진성, 공석기, 구정우 (2011)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학수 (201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특징: 그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디지털 정책연구*. 10(1), 455-461.
- 홍성태 (2004). 전자정부, 빅 브라더, 정보자본주의-네이스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4(1), 31-57.
- Allison, P.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 Banisar, D. and S. Davies. (1999). Global trends in privacy protect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privacy, data protection, and surveillance laws and developments.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18(1).

- Bennett, C and Raab, C. (2006). *The governance of privacy: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MA: MIT Press.
- Bygrave, L. (2002). *Data protection law: approaching its rationale, logic and limits*. New York: Kluwer Law International.
- Donnelly, J. (1986).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regime analysis*. Cambridge, MA: MIT Press.
- Drezner, D.W. (2004).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state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3), 477-498.
- Greenleaf, Graham (2013a). Global tables of data privacy laws and bills (3rd Ed, June 2013). UNSW Law Research Paper No. 2013-39.
- _____. (2013b). Sheherezade and the 101 data privacy laws: origins, significance and global trajectories. UNSW Law Research Paper No. 2013-40.
- Hass, p.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Spring 1992), 1-35.
- Keck, M. E., & Sikkink, 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arshall, M.G., Gurr, T.R., & K. Jagers. (2013).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2. Polity IV dataset version 2012 (p4v2012 and p4v2012d).
- Metzl, J. F. (1996). Inform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8(4), 705-746.
- Regan, P.M. (1995).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Risse-Kappen, T., Ropp, S. C., & Sikkink, K. (Eds.) (1999).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Vol. 6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ffer, G. (2000). Globalization and social protection: the impact of EU and international rules in the ratcheting up of U.S. privacy standards.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 1-88.
- Thomas, G. M. (Ed.) (1999). *Constructing World Cultur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1875*. Stanford University Press.
- Tuma, N.B. and M.T. Hannan. (1984). *Social dynamics: models and methods*. Orlando, FL: Academic Press.
- Wapner, P. (1995). Politics beyond the state: environmental activism and world civic politics. *World Politics*, 47, 311-340.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UIA). (various years). *Yearbook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Munich: K,G, Saur.
- United Nations. (201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treaties.un.org/>
- Weber, R. H. (2010). Internet of things-new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6, 23-30.
-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Washington, DC: World Bank.

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Eunhye Yoo*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factors on the legislation of data privacy law in 117 countries from 1960 to 2011. Previous research on data privacy law usually put its emphasis on the contents of data privacy law, legal interpretation of data privacy law or legal cases; yet it lacks academic approaches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s.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 in nation stat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national intern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legislation of data privacy law using an event history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aving data privacy law. Contrary to our hypotheses, FDI, internal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level of high technology do not show any effects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data privacy law.

Key Words: data privacy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human rights, informatization, event history analysis

◆ 2013.08.16. 접수 / 2013.09.21. 1차 수정 / 2013.09.29. 게재 확정

* Ph. 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eyoo@ssu.ac.kr)